

## 【서울교통공사 환경공학 분야 전문업무직 채용 공고】

서울교통공사에서 환경공학 분야 전문업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재공고) 합니다.

2024. 1.30.

서울교통공사 사장

### 1. 채용개요

####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인원	담당업무
환경공학 분야 (1명)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관련 업무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미세먼지 저감 사업 자문 및 효과 분석</li><li>미세먼지 저감 신기술 도입 관련 자문</li><li>실내공기질 조사 및 측정 결과 분석</li><li>미세먼지 저감 기술 연구, 마스터플랜 및 공기질 개선 사업 자문</li><li>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관리기법 연구 및 시스템 고도화 사업(이산화탄소 측정기 도입 등)에 따른 이중 측정기의 호환성 및 적합성 검토</li><li>기타 공사 관련 공기질 개선 업무</li></ul>

#### □ 근무조건

구 분	근 무 조 건
채용형태	• 전문업무직(계약직)
계약기간	• 2년
연봉수준	• 약 57백만원 상당 (세전) ※ 연봉수준 내 평가급(평가급 지급률 184%로 산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및 개인성과에 따라 연봉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
근무장소	• 서울교통공사 본사

## 2. 지원자격

□ 필수요건

채용분야	지원자격
환경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채용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li><li>※ 채용공고 종료일 기준</li></ul>

- 연 령 : 만 18세 이상 ~ 공사 정년범위 내
  - ※ 계약기간 중 공사 정년 도래자는 지원 불가
- 병 역 : 제한없음
  - ※ 단, 복무중인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 응시제한 : 업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3. 전형일정

구 분	채용일정	비 고
지원서 접수	2024. 1.30.(화) ~ 2.13(화) 18: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2.15(목)	
면접전형	2024. 2.20(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024. 2.22(목)	(선발배수 : 1배수)
결격사유 조회	2024. 2.22(목) ~ 2.26(월)	
최종합격자 발표	2024. 2.29.(목)	공사 홈페이지 등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
채용예정일	2024. 3. 4.(월)	

※ 상기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합격자 발표 공지의 확정된 일정 확인

※ 전형별 합격자 발표 :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http://www.seoulmetro.co.kr), 공사소개 > 채용정보) 게시

## 4. 지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4. 1.30.(화) ~ 2024. 2.13.(화) 18시
  - ※ 접수 마감시간(18시) 이후 접수 불인정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recruit@seoulmetro.co.kr](mailto:recruit@seoulmetro.co.kr))
- 지원자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별첨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첨 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첨 양식]
  - 학위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첨 양식]
- 지원자 유의사항
  - 면접전형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전자우편 서류접수 후 지원자에 대해 지원서상 이메일로 접수여부 회신(이메일) 회신받지 못한 경우 접수가 불인정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의 (☎02-6311-9154)

## 5. 선발기준

---

- 서류전형
  - 자격요건 평가
    - 필수요건 : 채용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자
      - ※ 채용공고 종료일 기준
    - 연 령 : 만 18세 이상~공사 정년범위 내
      - ※ 계약기간 중 공사 정년 도래자는 지원 불가
    - 병 역 : 제한없음
      - ※ 단, 복무중인 경우에는 단계별 전형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 합격자 결정 : 자격요건 평가로 적격여부 판단

면접전형

- 해당 직무 수행능력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평가기준 (15점 만점)】**

① 직원으로서 정신자세(3점), ② 업무적합성 및 경험(3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3점),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3점), ⑤ 창의력·의지력·기타 발전가능성(3점)

- 합격자 결정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산술평균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평정 “상” 개수가 많은 자 > 면접전형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 중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 원활한 채용 진행을 위해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결격사유조회 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 처리. 단,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 6. 예비합격자 제도 및 이의신청 제도 안내

예비합격자 제도

- 최종합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 순번 부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일 이전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3개월내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선발

이의신청 안내

- 대 상 : 채용전형 불합격자
- 기 간 :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 (토·일·공휴일 포함)
- 방 법 : 이의신청서 양식(별첨 다운로드) 작성 후 스캔하여 E-mail 제출

※ 이메일 주소 : [recruit@seoulmetro.co.kr](mailto:recruit@seoulmetro.co.kr)

##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사지원서 1부</li> <li>• 자기소개서 1부</li> <li>• 직무수행계획서 1부</li> <li>• 학위증명서 1부</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증명서(상세) 1부</li> <li>• 주민등록초본·등본 각 1부</li> <li>•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li> <li>•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li> </ul>

## 8.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응시제한 사유(공사 채용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지원서를 작성 바랍니다.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 시 응시자의 신체조건,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지원희망자는 채용예정일 즉시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내용과 증빙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 시험 응시가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의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예정자는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일정 및 발표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최종 임용자 외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임용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나,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파일(사본)은 반환하지 않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확인을 거쳐 반환)

※ 반환 청구 방법 : 별첨 양식(반환 청구서) 작성 서명 후 스캔본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recruit@seoulmetro.co.kr)

## 채용결격 사유

### □ 관련근거 : 공사 업무직관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퇴직일(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